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3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364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381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재현

변론 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4.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381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31. 접수 제17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4. 12. 30. 구미시 G아파트 건설공사(이하 '구미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5억 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이율 : 월 2%
 - 이자 지급 : 매월 지급
 - 상환기일 : 최소 2005. 3. 31., 최장 2005. 10. 31.
 - 담보내용 : 구미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인 I이 H에게 지급할 2,555,066,000원 중 위 대여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의 E 부장이 개인보증
- E 및 H의 대표이사 J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F은 2011. 5. 보증인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F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314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6. 23. 확정되었다. 2017.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7/18), E(7/18), S(4/18)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1. 31. 피고에게 2019. 1.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이 2018년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E 사이의 위 대물변제계약은 상속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F과 E은 2013. 7.경 E이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호(이하 'K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권을 F에게 넘기는 대신 F이 E의 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F은 2013. 12. K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1, 7, 8호증, 을 제2, 4, 5, 10, 11, 27 내지 29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대여 당시 E은 I의 직원으로서 구미아파트 공사의 담당 팀장이었다. 이 사건 대여는 구미아파트 공사와 관련이 없었지만 당시 H는 I에게서 곧 수익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차용금의 변제가 담보되는 상황이었기에 E은 F 및 J과의 친분으로 보증을 하게 되었다.
- I은 H에게 2005. 2.부터 2006.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30,000,000원 남짓을 지급하였으나, H는 F에게 2005. 6.경 1억 원(원금 기준)만 변제하였다.

○ F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0. 25. E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705).

○ E은 그 소유의 K 아파트의 처분권한(매매 및 매매대금 수령권한 등)을 F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2013. 7. 23.경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고를 하였다. 이후 F은 E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F은 E을 대리하여 2013. 12. 1. K 아파트를 제3자에게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본인이 수령하였다. 그에 앞서 2013. 10. 4. F은 K 아파트의 임차인 O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E을 대신하여 반환하였다.

○ 2017. 8.경 F은 J에게, 'E에게서 K 아파트 처분권을 넘겨받고 E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K 아파트 처분하여 2억 얼마를 받아 조금 손해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 한편 F은 2006. 3.경 H가 진행하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 2017. 12.경 J이 투병중인 F을 만나러 갔을 때 F이 J에게 위 투자금 5억 원의 변제계획을 묻자 J은 7억 원(=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 - H가 변제한 1억 원 - K 아파트 처분하여 회수한 2억 원 + 위 투자금 5억 원)의 변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F이 K 아파트를 처분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은 약 2억 원(= 4억 4,000만 원 - 2억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 원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위 금액 차이에 치중하여 E의 보증채무가 실제 회수한 금액만큼만 소멸한 것으로 본다면 E이 F에게 K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넘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F은 이미 E에 대한 집행권원(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E의 협조 없이도 언제든지 K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그럴 경우 E의 채무는 K 아파트 환가액만큼 소멸하기 때문이다. E이 F에게 위임장까지 작성해 주며 F의 채권 회수에 협조한 것은 그렇게 할 경우 나머지 보증채무는 소멸된다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E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이 없고 그로써 얻을 이익이 없음에도 호의로 보증을 서 주었고, F은 I이 H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증 경위와 본인의 부주의함을 감안하여 F은 2억 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으로 E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봄이 통념상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F이 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 신고를 하고 이후 E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나 J에게 '조금 손해 보았다'고 말한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F의 E에 대한 채권은 2013. 7. 23.경 소멸하였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영

판사권준범

판사장래아

별지

1) 제1심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이유로 증언을 일부 믿지 아니하였으나 과연 그러한 사정들이 증언을 믿기 어려운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한참 전인 2018. 6. E과 J의 대화내용(을 제27, 28호증, ① 음성 및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② E이 주도적으로 발언하고 J이 그에 대해 특별히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J 스스로 E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과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